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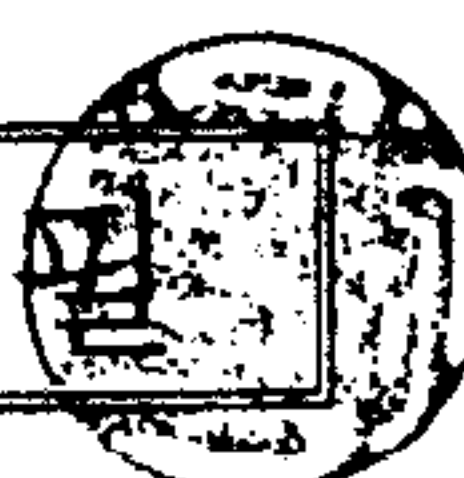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제 45 호
의 결 년 월 일	1999년 5월 19일 (제 83 회)

의결사항
의안가결

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년 월 일	1999년 5월 // 일

기획감사실장 심사



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45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5. //
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
(소관부서 : 자치행정과)

1. 제안이유

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정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정원의 총수(579명)를 수치로 명기



3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4. 근거법령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
붙임 1.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3. 행정자치부 조례준칙(안)

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“정원의 총수는”을 “정원의 총수는 579명이며”로 한다



부

칙

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문 대 비 표

(별표)

현행	개정안
제2조 【정원의 총수】 보은군에 ----- -----정원의 총수는 -----.	제2조 【정원의 총수】 보은군에 ----- -----정원의 총수는 579명이며 -----.
	

첨 부 자 료

【행정자치부 조례준칙(안) 1부】



보 은 군

○○시군구조례 제○호

○○시·군·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시·군·구(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<제1안>

제2조 (정원의 총수) 시·군·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○○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○○명

총 계 : ○○명

<제2안>

제2조 (정원의 총수) 시·군·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○○명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○○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○○명

제3조 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국(과)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, 읍·면·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- ②(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)

선취임 개정안
↑
○○